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 양이원영・우원식・이탄희

김민석 • 이원택 • 민형배

용혜인 • 조정훈 • 이수진비

이소영 · 맹성규 · 윤재갑

윤미향 • 문진석 • 김원이

김수흥 • 남인순 • 한병도

김회재 · 최종윤 · 신정훈

이학영 · 서동용 · 박 정

박영순 · 임호선 · 정청래

김정호 • 김홍걸 • 김성화

박홍근 • 박완주 • 서영교

박재호ㆍ허 영ㆍ인재근

고용진 • 전혜숙 • 기동민

이동주 • 윤후덕 • 김영배

장경태 · 노웅래 의원

(44위)

제안이유

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(IPCC)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.5℃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,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%

감축하고,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.

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,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.

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감축인지(炭素減縮認知)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함(안 제15조의2 제1항제7호 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"를 "성인지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탄소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"로 한다.

7의2. 탄소감축인지(炭素減縮認知) 결산서

2의2.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소감축인지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
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	류) ①
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	
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	
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2. 탄소감축인지(炭素減縮認
	知) 결산서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	②
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	
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제7호에 따른 <u>성인지</u>	⑤ <u>성인지</u>
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	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
<u>성인지 기금결산서</u> 의 작성에	른 탄소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
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	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
령으로 정한다.	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
	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